

서울특별시 금천구交通安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35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의원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
(안 제1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5. 5. 30. ~ 2025.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交通安全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交通安全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0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 음)
<u>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u>	<u><삭 제></u>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交通安全 기본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2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交通安全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交通安全 시설물”이란 사람 및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交通安全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交通安全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交通安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구 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금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역
 - 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1.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과장, 행정지원과장
 2. 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2명
 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관련 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목표설정 및 사후 평가
3. 교통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 사업 대상 선정 및 평가
5. 이밖에 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기타 관계되는 사람 등에게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시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교통안전교육 등

제12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법인,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자체교육
2.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통안전지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및 어린이의 등·하교 시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 운전자회)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5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 및 민간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6조 삭제 <2023.12.29.>

부 칙(제845호, 201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 따라 수립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계획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제142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 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 · 도유산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에의 유치 · 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